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21. 12. 7(화) 배포</p>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	2021. 12. 7(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 7(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조명연	(☎ 044-203-6877)
			교육연구사	최민애	(☎ 044-203-6874)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 추진하였다.
 - * 「학교보건법」 제15조, 2021. 6. 8. 개정, 2021. 12. 9.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구성원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 이번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업무과중 상황에서 학교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학교의 기준 신설 】

-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1998년 개정)되어 있었으나,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하여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중 “학교의사”를 “보건교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제23조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직무: 2014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장 <u>학교의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u></p>	<p>제6장 <u>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u></p>
<p>제23조(<u>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u>) ① <u>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u></p> <p>1. <u>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u></p> <p>2. <u>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u></p> <p>3. <u>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u></p>	<p>제23조(<u>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u>) <삭 제></p>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

에 관한 협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
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
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
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
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
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
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
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
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
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
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
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
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
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
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
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관한 지도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3조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신설>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제33조(규제의 재검토) -----

-----.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직무: 2014년 1월 1일